



자동차 폐윤활유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“자동차 폐윤활유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” (환경처 고시 제90-12호 '90.6.19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시기 : '90.8.1일 이후

3. 고시의 주요내용

○ 고시의 제정배경

그동안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교환시등에 발생하는 폐윤활유는 유상으로 수거되어 윤활기유등으로 재생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윤활기유 가격의 하락등에 기인하여 윤활기유등으로 재생이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그 수거 및 처리가 되지 않아 세차장등에 적체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윤활유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한 윤활유가 폐윤활유로 되어 발생된 때에는 그의 책임하에 폐윤활유를 회수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케 되었음.

○ 고시의 주요골자

— 세차장, 정비공장, бат데리점등 자동차윤활유를 교환하는 업자는 윤활유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윤활유를 드럼이나 전용의 용기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함.

— 윤활유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한 윤활유가 폐윤활유로 되어 발생된 때에는 직접 또는 위탁하여 폐윤활유를 회수하여야 함.

— 윤활유제조업자(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자)등은 회수된 폐윤활유를 스스로 소각시설을 설치, 운영하여 처리하거나 산업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또는 적정한 정제시설을 가진자에게 위탁하여 품질기준에 맞도록 정제하여 다음의 시설에서 중유대체연료로 사용토록 함.

○ 시멘트 또는 석회제조시설 중 소성로

○ 화력발전시설

○ 10톤 이상의 보일러

— 윤활유제조업자등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폐윤활유 회수 및 처리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('90년도의 경우에는 '90.8.7까지 제출)하여야 함.

— 윤활유제조업자등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분기별 회수 및 처리실적을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.

— 고시의 시행일은 '90년 8월 1일로 함

4. 고시시행에 따른 지침

가. 폐윤활유의 보관 및 회수

○ 회수대상 폐윤활유 : 자동차의 엔진유 및 기어유에 한함.

○ 회수시기

폐윤활유는 배출자가 최소 수집단위(1드림이상)가 될때까지 모아서 화재위험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윤활유제조업자, 수입업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순회할 때 수거토록 하거나 별도의 유선연락(지역별 연락처 별첨참조)에 의하여 수거함.

○ 보관방법

- 폐윤활유는 드림이나 별도의 전용탱크등에 보관시에는 물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이나 덮개를 하여야 함.
- 보관용기는 화재발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화기가 없는 장소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, 도시의 미관이나 통행에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도로등이나 눈에 잘 띄는 장소를 피하여 설치보관하여야 함.

○ 회수 및 처리비용

- 폐윤활유의 수거 및 처리는 윤활유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책임하에 하는 것인만큼 “폐유 회수처리중” 해당물량에 대하여는 배출자는 수거자에게 수거 또는 처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.
- “폐수회수처리중”이 없는 '90.8.1이전의 적체물량에 대하여는 드림당 5,000원의 수거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함.
- 폐윤활유의 보관은 배출자 책임하에 하여야 하므로 보관에 필요한 드림 등 용기의 확보를 위한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 하여야 함.

○ 폐윤활유의 회수 및 처리책임자

- 폐윤활유는 윤활유제조업자, 수입업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가 회수, 처리하게 되는데 윤활유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윤활유의 회수 및 처리책임은 원칙적으로 윤활유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있음.
- 폐윤활유는 그 원래의 제품의 종류 및 제조 수입원에 관계없이 별첨 2의 지역별 회수 및 처리업자(수거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의 자동차 폐윤활유 재생이용자 신고증을 소지한자)에 연락하여 수거토록 함.
- 지역별 회수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및 재생 이용의 범위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의 재생·이용 인정을 받아 시·도지사의 재생 이용자 신고를 하여야 함.

○ 회수절차

- 윤활유 교환업자(세차장등)는 발생된 폐윤활유를 일정량 이상 모아서 적정장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윤활유제조업자등이 지정한 자(별첨-2)가 순회방문시 인계함을 원칙으로 하되
- 그 보관장소의 협소등으로 폐윤활유를 즉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윤활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또는 그지역의 회수 및 처리업자에게 연락(별첨 3의 연락처 참조)하여 수거해 가도록 함.

- 폐윤활유를 회수 및 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윤활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판매시에 박스안에 들어있는 별첨-3과 같은 “폐유회수처리증”을 같이 인계하여야 함
폐유회수처리증은 윤활유의 단위포장단위(1ℓ, 4ℓ, 20ℓ, 200ℓ)로 1매씩 되어있으며, 폐윤활유 1드럼당(200ℓ)의 인계시 1ℓ용 폐유회수처리증의 경우에는 308매, 4ℓ용 폐유회수처리증의 경우에는 77매(4ℓ의 윤활유 교환시 약 2.6ℓ의 폐윤활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), 20ℓ용 폐유회수처리증의 경우에는 15매, 200ℓ용은 폐윤활 2드럼에 3매의 폐유회수처리증을 회수 및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함)

나. 폐윤활유의 운반

- 폐윤활유의 회수 및 처리업자는 전용의 운반차량(탱크로리 등)을 이용하여 폐윤활유를 수집, 운반하여야 함.
- 폐윤활유를 수집, 운반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기준에 따라야 함.

다. 폐윤활유의 처리

- 윤활유교환업자로부터 회수된 폐윤활유는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되어야 함.
- 고시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시 별표에 정한 연료용 정제유류의 품질기준에 맞도록 정제하여야 하며, 정제된 유류는 윤활유 제조업자들이 인정 한 시설에만 판매하여야 함.
- 이 경우 회수 및 처리업자는 그 품질 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석유류 품질검사소 등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최소 1개월에 1회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시험성적서를 시행일로 부터 최소 3년간 비치 보관하여야 함.

라. 연료용 정제유류의 사용

- 시멘트제조업체, 화력발전소 등을 경영하는자는 윤활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지정을 받은 회수 및 처리업자로부터 연료용 정제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구입일로 부터 최소 1년간 비치 보관하여야 함.

마. 폐윤활유 회수 및 처리비용의 지불

- 윤활유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폐윤활유의 회수 또는 처리를 회수 및 처리업자에게 위탁 한 때에는 폐윤활유의 회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(재생 이용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제한 차액에 상당하는 비용)을 당사자간에 약정된 바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함.

바. 폐윤활유 회수 및 처리계획의 제출

- 윤활유제조업자 등이 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윤활유 회수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코자 하는 때에는 개별업체별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을 받은자의 명의로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음.
- 이 경우 위임을 받은자는 고시 제6조 제1호의 자동차용 윤활유제조 또는 수입계획량에 대하여는 업체별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.

사. 폐윤활유 회수 및 처리실적의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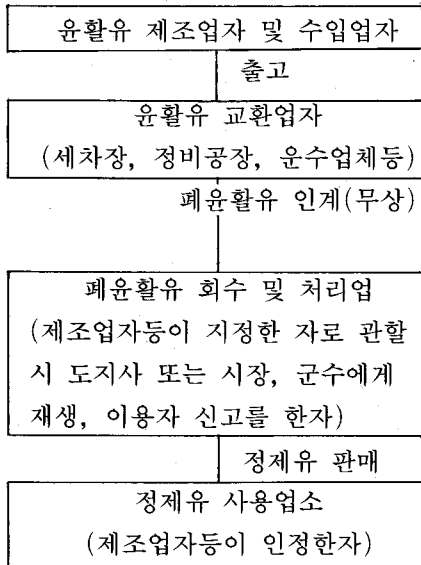
- 윤활유제조업자등이 폐윤활유 회수 및 처리실적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업체별로 제출함을 원칙으로하나 그 회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을 받은자의 명으로 제출할 수 있음.

5. 기타 행정사항

- 지방환경청 및 시도는 별첨 2의 지역별 회수 및 처리업자로부터 재생 이용인정 신청서 및 재생 이용자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속히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방환경청 또는 시도의 윤활유교환업소, 지역별 회수 및 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하여는 환경처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달하는 바에 의함.
- 지역별로 회수책임업소 및 처리업소가 추가 확정되거나 제조 또는 판매업체별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임.

- 첨부 : 1. 자동차 폐윤활유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1부
 2. 지역별 회수 책임업소 1부.
 3. 폐윤활유의 회수 및 처리절차도 1부.
 4. 폐유회수처리중 견본 1부. 끝

폐윤활유 회수 및 처리절차도



- * 제품출고시 용량별(1ℓ, 4ℓ, 20ℓ, 200ℓ)로 용량이 표시된 회수처리중(별첨 견본참조)을 1매씩 삼입
- * 윤활유 교환후 발생된 폐윤활유는 드럼용기등에 보관하고 회수처리중은 모아 두었다가 폐윤활유회수자(지역별로 지정)에게 폐윤활유와 함께 인계(예)폐윤활유 1드럼 인계시 4ℓ용 회수처리중 77매(20ℓ용의 경우는 15매)를 인계
- * 회수된 폐윤활유는 정제시설에서 정제후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자중 제조업자등이 인정한 자에게 정제유를 판매하고, 회수처리중은 제조업자등(윤활유공업협회가 업무대행)에게 인계
- * 중요대체연료로 사용(시멘트 또는 석회소성로, 화력발전시설, 10톤이상의 산업용보일러)



지역별 회수 및 처리업소

처리업체명	공용전화번호	회수자 전화번호	지 역
서광정유(주)(0339)52-2013 대표자: 권선대 소재지: 경기화성군 정남면 고지리 산 32	(0339) 73-7900~3	(02)571-6167 ~9	서울특별시: 서초구, 관악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
		(02)308-1148 ~9	서울특별시: 강서구, 양천구, 구로구, 영등포 구, 동작구
		(0331)36-4026 38-6573 (0331)33-1397 ~9	경 기 도: 수원시, 의왕시, 과천시, 군포시, 안양시, 성남시, 하남시, 양평군, 여주군, 용인군, 광주군, 이천군 강원도(전지역): 강릉시, 동 해시, 삼척 시, 속초시, 원주시, 춘 천시, 태백 시, 고성군, 명주군, 삼 척군, 양구 군, 양양군, 영월군, 원 주군, 인제 군, 정선군, 철원군, 춘 성군, 평창 군, 홍천군, 화천군, 횡 성군

처리업체명	공용전화번호	회수자 전화번호	지 역
삼성정유(주)(02)972-2469 대표자: 최천행 소재지: 서울시 노원구 공릉 1동 529-3	〃	(02)971-2065 976-8346	서울특별시: 노원구, 도봉구, 성북구, 성동구, 중랑구, 동대문 구 경 기 도: 의정부시, 동두 천시, 미곡시, 구리시, 파주군, 양주군, 남양주 군, 포천군, 가 평군, 연천군
성림산업(주)(02)306-2726 ~9 대표자: 김영중 소재지: 경기 고양군 화전읍 현천리 48-6	〃	(02)661-0394 ~6	서울특별시: 마포구, 은평구, 종로구, 중구 인천직할시(전지역) 경 기 도: 고양군, 김포군, 강화군
		(02)309-5301 ~2 372-3022	서울특별시: 용산구, 서대문 구 경 기 도: 부천시, 광명시, 시흥시
대호석유공업사(0333)63- 0211~5 대표자: 김수부 소재지: 경기 평택군 진위면 하북리 261-3	°	(02)692-6264 ~5 692-8494	경 기 도: 송탄시, 안산시, 오산시, 평택시, 안성군, 평택군, 화성군 대전직할시: 전지역 충 청 남 도: 전지역 공주시, 온양시, 대천시, 서산시, 천안시, 공주군, 금산군, 논산군, 당진군, 보령군, 부여군, 서산군, 서천군, 아산군, 연기군, 예산군, 천원군, 청양군, 태안군, 홍성군

저리업체명	공용전화번호	회수자 전화번호	지 역
			충청북도 : 전지역 제천시, 청주시, 충주시, 괴산군, 단양군,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, 음성군, 제원군, 증원군, 진천군, 청원군
한국송유화학(0522)75- 1221~3 대 표 자 : 김규식 소 재 지 : 울산시 남구 여천 동 426-1		(0522)75-1221 ~3 69-0726	부산직할시 : 전지역 대구직할시 : 전지역 광주직할시 : 전지역 경상남도 : 울산시, 양산 군, 울주군 경상북도 : 전지역 전라남도 : 전지역 전라북도 : 전지역
대우정유공업사(0525)35- 3521~3 대 표 자 : 송수일 소 재 지 : 경남 김해시 안동 426-1	-	(0525)35-3521 ~3 제주지역 : (064) 55- 5189 55- 5190	경상남도 : 김해시, 마산 시, 밀양시, 삼천포 시, 장승포시, 진주 시, 진해시, 창원시, 충무시, 거제군, 거 창군, 고성군, 김해 군, 남해군, 밀양군, 사천군, 산청군, 의 령군, 의창군, 진양 군, 창녕군, 통영군, 하동군, 함안군, 함 양군, 합천군 제주도 : 전지역

정성드려 모은폐유 재생연료 에너지화